

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
세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

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

의안 번호	80-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2. 6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전액 또는 일부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을 세입·세출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고, 기제출한 세입·세출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함.

2. 주요골자

-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	기제출3회 추경예산안	증(△)감	%	비고
합 계	6,910,266,596	6,908,577,413	1,689,183	0.02	
일 반 회 계	3,960,328,762	3,959,159,579	1,169,183	0.03	
특 별 회 계	2,949,937,834	2,949,417,834	520,000	0.02	
공기업특별회계	1,629,611,580	1,629,611,580	0	-	
기타특별회계	1,320,326,254	1,319,806,254	520,000	0.04	

○ 최종예산 성립 후부터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을 세입·세출예산에 추가 반영할 수 없어 세입징수결의 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최종예산안의 총칙에 간주처리 규정을 두어 포괄적인 사전 의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총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.

-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2010. 12. 31까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또는 일부가 교부된 『연평도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』는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성립 후에 간주처리 예산을 편성·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간주예산을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.

○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예산액 3,959,159,579천원을 3,960,328,762천원으로 수정(1,169,183천원 증액)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연평도 피해관련 응급복구비(특별교부세) 1,000,000천원
- 가정폭력·성폭력 방지사업(우수시설 7개소) 16,400천원
- 한부모 보호시설 기능보강(6개소, 시비50% 별도) 22,783천원
-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(1개소) 80,000천원
-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(계양구) 50,000천원

○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42,132,479천원을 42,109,696천원으로 수정(22,783천원 감액)함.

○ 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예산액 1,319,806,254천원을 1,320,326,254천원으로 수정(520,000천원 증액)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광역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/ 세출 예비비 320,000천원
-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이자수입 / 세출 예비비 200,000천원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